

현행	개정안
<p>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17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등)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가정용봉투 및 사업장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18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동장 및 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7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p>	<p>제27조(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5. 5. 4.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5. 5. 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5. 5. 2.
- 다. 상정일자 : 제2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95.5.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손시익 도시정비국장)

- 가. 제안이유
미관지구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산정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미관지구내의 대지안의 공지적

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대지안의 공지적용 완화 전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함.(안 제5조제14호)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 3m 후퇴부분의 대지에 규정된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산입토록 함. (안제17조제3항제3호)
- 미관지구안의 근린생활시설중 정육점의 경우 미관도로에서 정육점의 쇼케이스의 고기와 고기절단기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제한을 완화토록 함 (안 제30조제3항 단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건축선 후

퇴부분 공지에 대형수목을 식재하고 대형수목 사이에 석재의자 또는 화분등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불법주차등으로 인한 시민통행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요인을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가로경관도 개선하고 시민통행 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조경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며,

○2001년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전문 판매점의 활성화물 위하여 현재는 미관지구에서 건축규제 대상이었던 정육점 건축을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용도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이인구위원):우리구에서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곳은 몇군데나 있는가?
- 답변요지(김평국 건축과장):20미터이상 도로변은 대체로 해당됨.
- 질의요지(이인구위원):건축선 후퇴부분에도 주차를 못하게 하면 가뜩이나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주차난이 가속화될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김평국 건축과장):건축선 후퇴부분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이며 단속대상임.
- 질의요지(윤명규 위원):준공할 때만 조경을 하고 준공후에는 수목을 뽑아버리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답변요지(김평국 건축과장):과거에는 공간이 좁고해서 나무가 많이 죽었으나, 3미터 후퇴부분에 조경을 하면 개방감도 있고 주인도 신경을 쓸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는 나무가 죽으면 건축주에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무를 다

시 식재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질의요지(이천규위원):3미터 후퇴부분에 나무등을 심으면 옥내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매우 불편할 것이 아닌가?

○답변요지(김평국 건축과장):현재는 미관지구내에 조경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조경을 하더라도 5~7미터 간격이 될 것이므로 차량진입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5. 토론요지:없음
- 6. 심사결과: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없음
- 8. 기타사항: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일자:1995. 5. 2.
제 출 자: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미관지구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산정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미관지구내의 대지안의 공지적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개정골자
 - 대지안의 공지적용 완화건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함(안 제5 조제14호)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 3미터 후퇴부분의 대지에 규정된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에 산입토록함(안 제17 조제3항제3호)
 -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규정된 수목을 식재하고 석재의자 또는 화분등을 설치하여 미관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주차를 방지토록 함(안 제30

조제3항 단서)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5. 법률 제4877호) 제15조
- 건축법(1995.1.5. 법률 제4919호) 제32조, 제45조제2항
- 건축법시행령(1994.5.28. 대통령령 제14271호)제27조,제69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995.1.16. 조례 제3166호)

4. 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여부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0호의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완화”를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경완화”로 하고, 동조중“14호” 내지 “제21호”를 “제15호”내지 “제22호”로 하며, 동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3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대지안의 공지적용완화

제1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주변지역의 여건,공지 및 건물의 형태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3미터 후 퇴부분의 공지에 수고5미터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5미터 내지 7미터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한 경우에는 수목1그루당 6제곱미터의 면적을 조경 면적에 산입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근린생활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 (단,정육점 쇼케이스의 고기와 고기절단기 및 분쇄기등 정육점 기계가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조

에서 같다), 세탁소, 장의사 제3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변지역의 여건,대지 및 건물의 형태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격으로 수고5미터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5미터내지 7미터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하여 수목사이에 석재의자 또는 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능) (생략) 1~9. (생략) 10.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완화 11.~13.(생략) (신설) 14.~21.(생략)</p>	<p>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경완화 11.~13.(현행과 같음) 14. 제3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대지안의 공지적용 완화 15.~22. (현행 제14호 내지 제21호와 같음)</p>
<p>제17조(대지안의 조경)①~②(생략) ③ (생략) 1~2.(생략) (신설)</p>	<p>제17조(대지안의 조경)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주변지역의 여건, 대지 및 건물의 형태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3미터 후퇴부분의 공지에 수고5미터이상, 수관폭3미터 이상의 교목을 5미터 내지 7미터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한 경우에는 수목1그루당 6제곱미터의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p>
<p>제28조(용도제한)①(생략) 1.~2.(생략) 3. 근린생활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4.~11.(생략) ②~④(생략)</p>	<p>제28조(용도제한)①(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3. 근린생활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단, 정육점 쇼케이스의 고기와 고기절단기 및 분쇄기등 정육점기계가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세탁소, 장의사 4.~11.(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p>
<p>제30조(대지안의 공지)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신설></p>	<p>제30조(대지안의 공지)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변지역의 여건, 대지 및 건물의 형태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고 5미터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 교목을 5미터 내지 7미터 간격으로 줄지어 식재 하여 수목사이에 석재의자 또는 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p>